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1/6

제 정 : 2014. 7.

## 【 목 차 】

제1장 총 칙

제2장 구 성

제3장 회 의

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2/6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3/6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7조(이사들의 임무)

-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(소집권자)
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제8조 1항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영업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10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4/6

## 제11조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(1) 주주총회의 소집

(1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
(1)-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(이하 “전자주주총회”라 한다)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
(3) 재무제표의 승인

(4)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결정

(5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
(6) 정관의 변경

(7) 자본의 감소

(8) 주식의 소각

(9) 주식 배당 결정

(10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
(11) 이사의 보수

(12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의안

#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(2) 이사의 타회사 임원겸직에 관한 사항

(3) 이사,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
(4)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사항

(5)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

(6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
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
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

(1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
(2)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

(3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5/6
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이 인정한 사항
 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 제12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제13조(관계인의 출석)
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14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5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	PI-FA-0601	사규번호	PI-FA-0601
		개정번호	4
	이사회 규정	개정일	2026.03
		P A G E	6/6
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이 규정은 2014 년 07 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 년 03 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 년 05 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3 년 03 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3조(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